

**LSPA 검토 및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**

**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**

2025. 01

**제 안 요 청 서**

# 제안의 개요

## 용역 개요

* 용역 명칭 : 「 LSPA 검토 및 자산유동화 법률자문 관련 업무 수행 」
* 목 적 :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매각금융회사(이하 “매도인”이라 함) 가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부실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제 계약서 검토, SPC 설립, 자산유동화 등 당사에 필요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복수의 법무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제안을 받고자 함.
* 용역기간 :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(2025년 1분기 당사 참여 매각 Program부터 적용 예정)
* 선정대상 : 부실채권 자산유동화 전문 법무법인
* 대상자산 : 2025년 시장 및 매도인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
	+ 연간 기준 약 OPB 72,000 ~ 80,000 억원(약 63개 매각 Pool)
* 용역보수 :

자문사별 제안 보수 검토 후 당사의 내부 용역보수 지급지침에 따라 결정함.

(\*) 용역보수 지급지침은 선정기준일 이후 변경될 수 있음.

## 용역의 범위

| **구분** | **업무 내용** |
| --- | --- |
| 제 계약서 및 부속서류 검토 업무 | * 매도인 및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자산양수도계약서(이하 “LSPA”) 검토
* 매도인, 매수인 및 양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
* 피담보채권 확정통지서의 검토
* 채권양도통지서의 검토
*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검토 등 제 계약 관련 업무 일체
 |
| SPC 설립 관련 자문 업무 | *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한 본건 거래 구조에 대한 검토
* SPC의 설립 등 투자관련 지원 업무
* SPC의 정관 작성, SPC의 사채 발행계약서 작성 등 투자관련 지원 업무
 |
| 자산유동화 관련 자문 업무 | * 업무위탁계약, 자산관리위탁계약, 자금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및 이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의 제공
* 계획등록 및 양도등록 업무를 수행하며 본건 자산유동화 구조의 검토 및 본건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기타 제반 법률자문의 제공
*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진정양도 의견서(True sale opinion)의 작성 및 기타 성공적인 Closing을 위한 제반 법률 자문
* 자산유동화 프로젝트의 당사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 등과의 본건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관련 회의, 교신 및 이에 대한 보고
*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대한 대응
 |
| 기타 | * 기타 위 업무에 부수하는 협상 진행 등 법무 용역 일체
 |

# 제안일반사항

## 입찰방식 : 경쟁입찰

## 제안업체 구비조건

* + 변호사 또는 ｢변호사법｣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
	+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임제한 사유가 없는 자

## 계약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

* + 제출된 제안서에 근거하여 법무법인 Pool 선정 이후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)을 준용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

## 평가 및 선정방법

* 법무법인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통하여 선정하고 평가 과정 및 결과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
* 평가항목 및 배점
	+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별첨 참조
* 법무법인 Pool 선정
	+ 제안서가 접수된 전체 법무법인에 대하여 평가항목의 점수로 평가위원별 평가순위를 산정하고 1순위 최다득표기관을 선정.
	+ 1순위 최다 득표 기관이 동수일 경우에는 2순위 득표수로, 2순위 득표수도 동수일 경우 3순위 득표수 등의 순서로 당사 내 법무법인 순위를 결정.
* 용역 수행 절차
	+ 법무법인 Pool로 선정된 후 향후 1년 간 당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자산유동화 필요 시 자문사 Pool 내에서 순차적 업무수행 방식으로 선정하되, 당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(수임제한 등의 사유로 배제 등), 해당 순서의 법무법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 순서의 법무법인이 수행
	+ LSPA 검토업무는 법무법인 Pool 내에서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수행
	+ 인력투입계획, 용역수행방법, 용역수수료 등 협의를 통해 해당사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.

## 제안서 및 필요 서류의 제출

* + 제출마감일 : 2025년 1월 15일(수) 14:00까지
	+ 제출방법 : 방문제출 또는 배달 용역
	+ 제 출 처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(서소문동, 유원빌딩 4층)

연합자산관리(주) NPL투자본부 이준엽 담당

* + 제출서류 : 제안서 9부(수록 CD 1부 별도 제출하고 담당자 전자메일로 송부)

선정평가표 중 계량적 평가항목 부문에 대한 자체 평가표 9부

* + 선정결과 통지 : 2025년 1월 24일 이내, 해당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별 통지

# 제안서 작성지침

## 제안서 작성요령

제안서의 형식은 자유로이 선택이 가능하나 **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**

* 제안서 작성 항목

| **제안항목** | **용역범위 및 작성요령** | **비고** |
| --- | --- | --- |
| 법무법인 적격성 검토(40점) | *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회원 수
* 자산유동화 업무 경험 (최근 3년)
* NPL 매각/매수자문 실적
 | 재직중인 변호사NPL Program 관련 유동화LSPA 검토 등 |
| 자산유동화 수행 능력(20점) | * 담당 변호사 및 주요인력의 업무수행 능력
* 당사와의 업무 경험에 대한 평가
* 기타 NPL 유관 업무 경험
 | 당사 심사위원의 개별 경험에 따른 비계량적 평가 |
| 프로젝트 추진 방안(20점) | * 수임 후 Project 전반에 대한 수행 절차
* 자산유동화 절차에 대한 이해 수준
* 금융감독기관 협의 능력
 | 당사 심사위원의 개별 경험에 따른 비계량적 평가 |
| 제안 보수 (\*)(20점) | * 자산유동화 법률자문 용역 건당 수수료
 | 설립 SPC 기준 |

(\*)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 보수 외 LSPA 검토비용은 별도 지급 (1건 당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며, 선정기준일 이후 변경 가능)

## 제안서의 효력

* +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법무법인으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
	+ 다만,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됨.
	+ 당사는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.

## 유의사항

* +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,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불리하게 평가 받을 수 있음.
	+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	+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,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,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.
	+ 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비용은 제출하는 자의 부담이며,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.
	+ 제안서 접수일 이후 내용의 수정, 삽입, 보완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그 여부를 결정하며, 당사는 자문사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.

# 문의처 등

* 문의처
	+ NPL투자본부 안상준 책임(sjan@uamco.co.kr, 02-2179-2480)
	+ NPL투자본부 이준엽 담당(ljy0420@uamco.co.kr, 02-6361-2374)
* 기 타
	+ 본 제안요청서를 방문 접수하지 아니하고 배달 접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Fax(02-2179-2408) 송부 요망
* Home Page : www.uamco.co.kr

**(별첨) LSPA 검토 및 자산유동화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평가표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평가항목** | **내용** | **배점** | **배점구간** |
| **1. 적격성****(40점)** | -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회원수(공시 회원현황 월별통계자료 최신기준) | **5** | 5 | 4 | 3 | 2 | 1 |
| 12명 이상 | 10명 이상 | 8명 이상 | 6명 이상 | 6명 미만 |
| - 자산유동화 업무 경험(최근 3년간 실적 / NPL Program 관련 자산유동화 업무 실적) | **25** | 25 | 20 | 15 | 10 | 5 |
| 15회 이상 | 12회 이상 | 9회 이상 | 6회이상 | 6회 미만 |
| - NPL Program 자산매매계약서 검토 경험(최근 3년간 NPL 매각/매수 법률자문 실적) | **10** | 10 | 8 | 6 | 4 | 2 |
| 15회이상 | 12회이상 | 9회 이상 | 6회이상 | 6회 미만 |
| **2. 자산유동화** **수행능력****(20점)** | - 담당 변호사 및 주요참여인력의 업무능력 (인별 프로필 제시)- 자산유동화, LSPA검토 등 유관 업무 경험- 기타 NPL 유관 업무수행 경험 | **20** | 20 | 16 | 12 | 8 | 4 |
| **3. Project** **추진방안****(20점)** | - 수임 후 Project 전반에 대한 수행절차- 자산유동화 절차에 대한 이해도- 금융감독기관 협의 능력 | **20** | 20 | 16 | 12 | 8 | 4 |
| **4. 제안 보수(20점)** | - 유동화 법률자문 용역 건당 수수료(설립 SPC 기준) | **20** | 20 | 16 | 12 | 8 | 4 |
| 15백만원이하 | 15백만원 초과20백만원 이하 | 20백만원 초과25백만원 이하 | 25백만원 초과30백만원 이하 | 30백만원초과 |
| **합계** |  | **100** |  |  |  |  |  |